

(전면)

## 등록기관지정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귀하

본인은 본인이 발행한 다음의 공사채(향후 발행할 공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등록업무를 취급할 등록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정하고, 공사채등록관계법령, 한국예탁결제원의 채권등록업무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 지정서를 제출합니다.

등록대상 공사채 :

주 소 :  
상 호(또는 명칭) :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



<붙임>

### 1. 국내법인의 경우

- 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단, 지방자치단체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 나. 예탁결제원 소정의 인수공사채등록업무 참가신청서 1부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에 한함)

### 2. 외국법인의 경우

- 가.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1부(단,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1부
- 다. 예탁결제원 소정의 인수공사채등록업무 참가신청서 1부(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에 한함)
- 라. 등록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또는 위임장 각 1부

※ 외국법인의 경우 붙임 서류 및 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면)

## 등록업무에 관한 약속서

1. (발행내역 등의 인계) 본인은 등록대상 채권의 발행내역과 그 권종별 액면금액이 제일 낮은 채권의 건양 1매(등록대상 채권 전부가 등록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인계하겠습니다. 다만, 이 약속서를 제출한 때까지 발행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발행이 있는 때에 즉시 인계하겠습니다.
2. (사고신고 통보) 본인은 등록대상 채권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재발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겠습니다.
3. (원리금 상환에 관한 변경사항 통보) 본인은 등록대상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지급 방법·지급장소 및 지급시기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겠습니다.
4. (채권의 회수 및 보관) 사전에 본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등록청구를 받아 회수한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등록말소된 채권의 교부) 본인은 등록된 채권에 대하여 등록말소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채권을 즉시 발행하여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교부하겠습니다.
6.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의 발행 통보) 본인은 본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자 또는 인수자의 신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청내역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겠습니다.
7. (변동금리채권의 원리금 확정)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의한 방법으로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변동금리채권의 원리금 확정에 필요한 기간 전에 그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겠습니다.
8. (원리금 상환통지 및 위임) 본인은 등록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보증기관에 의하여 상환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에는 위의 원리금 상환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며,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대리인 변경 통지) 본인(외국법인에 한함)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겠습니다.